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 동 주 택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「방송법 시행령」 개정(‘23.7.12.)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,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,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
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(안 제23조제3항)
- 나.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(제23조제10항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방송통신위원회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

대통령령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“제9호”를 “제10호”로 한다.

10.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관리비 등) ①·② (생략)	제23조(관리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0.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</u>
④ ~ ⑨ (생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(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)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.	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3항제1호부터 <u>제9호</u> 까지의 각각의 사용료(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)	3. ----- <u>제10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⑪ (생략)	⑪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80